2014년 2월 13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월13일(목) 06:00 이후 보도 가능
www.smba.go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보 도 자 료

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문의: 공공구매판로과 • 과장 : 김문환(042-481-4374) • 사무관 : 이성구(481-4569)

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확대로 중소기업 판로 지원

- 중소기업청, 우선구매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9→13종으로 확대 -

□ **중소기업청**(청장 한정화)은 지난해 8.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된 **『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』**의 후속 조치로서 **'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'**의 종류를 당초 **9종**에서 **13종**으로 확대하였다.

□ **새롭게 추가된 기술개발제품에는**

① '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'에 의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개발된 **'중소기업 융·복합기술개발제품'**

② '산업융합촉진법'에 의한 중소기업 산업융합 역량 강화사업으로 추진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에 의해 고시하여 지정한 **'산업융합품목'**

③ 공공기관의 개별 R&D사업으로서 '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'에 따라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품 중 **'개발선정품'**으로 지정된 제품

③ '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'에 따라 **'성과공유 기술과제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'**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새롭게 포함시켰다.

□ 새롭게 추가한 배경으로는

○ 중소기업청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%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

-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'10년 1.37조원, '11년 1.68조원, '12년 2.1조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반면, '10~'12년 까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대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비율은 평균 8.37%로 목표치에 다소 모자라는 현실이다.

- 이는 공공기관(743개 기관)이 기술개발 제품을 구입하고 싶어도 충분한 종류와 수가 부족하여 구매력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지정을 확대하게 되었으며,

- 아울러, 창조경제의 실천 주체로서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신뢰성과 자금력 부족으로 사업화 초기에 일반시장 진입에 애로를 느끼는 중소·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하게 되었다.

□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

○ **'중소기업 융·복합기술개발제품', '산업융합품목'**들을 생산하는 중소·벤처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이 쉬워지며, 새로운 수요도 생기게 되어 **중소기업의 산업융합 분야가 크게 성장**할 것으로 본다.

○ 또한,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추진하는 '**개별 R&D사업**의 **활성화**'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'**성과공유제의 확산**'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,

○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구매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의 범위가 확대되어 구매목표 달성이 용이하게 되고, 궁극적으로는 중소·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.

［ 참고 1 ］

《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》

○ 성능인증, NET, NEP, GS, 우수조달물품 등 우수 기술개발제품을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토록 유도하는 제도

- 판로지원법에서는 공공기관별로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%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토록 권고하고 있다.

○ 현재,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은 **9종***을 지정·운영 중에 있으며, 종류별 수는 총 6,028*개로서 우수소프트웨어(GS) 37.3%, 우수조달제품이 30.4%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

* 9종 : 성능인증, NET, NEP, GS, 우수조달물품,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, 구매조건부 R&D사업,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(중소기업청), 녹색인증대상제품

* 기술개발제품 종류별 수('14. 1. 6 현재)

구분 / 계	GS	우수조달	성능인증	NET	NEP	구매조건부	공동상표	녹색인증	민관공동투자
6,028 (100%)	2,249 (37.3)	1,831 (30.4)	1,125 (18.7)	316 (5.2)	155 (2.6)	150 (2.5)	139 (2.3)	55 (0.9)	8 (0.1)

○ 연도별 구매액

연도별	중소기업물품구매(조원)	기술개발제품(조원)	기술제품 비율
'10	18.3	1.37	7.5 %
'11	20.0	1.68	8.4 %
'12	23.1	2.1	9.2 %
평균		1.72	8.37 %

[참고 2] 『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』 개정(안)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(안)
제3조(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) ---------- ----------	제3조(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) ---------- ----------
4.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른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(특허권자에 한함)	4.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(통상실시권자 제외)
5. (신설)	5.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융·복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
6. (신설)	6. 산업융합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, 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
7. (신설)	7.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(기획재정부고시 제2010-33호)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'개발선정품'으로 지정된 제품(단, 해당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에서 지정된 제품으로서 해당 수탁기관과의 계약 건에 한정하여 기술개발제품 으로 인정)
8. (신설)	8.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(공공부문)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

	(단, 해당기관의 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채택되어 수탁기관과의 구매계약 건에 한정하여 기술개발제품 으로 인정)
[별표 1] **성능인증 대상제품** --- --- 13.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따라 신기술(NET)로 인증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--- --- 19. (신설) 20. (신설) 21. (신설) 22. (신설)	[별표 1] **성능인증 대상제품** --- --- 13.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,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,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신기술(NET)로 인증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--- --- 19.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융·복합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20. 산업융합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, 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21.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(기획재정부 고시 2010-33호)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'개발선정품'으로 지정된 제품 22.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(공공부문)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